##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7631

발의연월일: 2022. 9. 29.

발 의 자:진성준·강병원·강선우

박상혁 · 소병훈 · 우원식

위성곤 • 유정주 • 이동주

전혜숙 · 최기상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와 이상기후(異常氣候)로 인하여 가뭄과 홍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이로 인한 피해 규모 역시 증가하고 있어 기존의 수자원 관 리체계로는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물 관련 재해의 예방을 효과적으 로 수행하기 어려워짐. 이에 해외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보다 신속하 고 면밀한 수자원의 관측과 관련 재해 발생의 감시 등 기후위기에 적 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첨단 위성관측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진행하고 있음.

그런데 수자원 관리체계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첨단 위성이 관측한 수자원 자료 및 물 관련 재해 감시를 위한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관측망의 구축이나 관측된 정보의 수집·활용과 관련한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첨단 위성관측을 위한 '수자원위성'의 개념과 수자원위성 관측

망의 구축·관측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면밀하고 효과적인 수자원 관리 및 물 관련 재해의 감시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의2신설 등).

법률 제 호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수자원위성"이란 수자원의 관측, 수자원 관련 재해의 감시, 수문조사 자료의 수집 및 배포 등을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인공 위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홍수·가뭄·녹조 등 수자원 관련 재해의 감시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자원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제2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의2. 제13조의2에 따른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 관련 업무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3의2. "수자원위성"이란 수자원
	의 관측, 수자원 관련 재해의
	감시, 수문조사 자료의 수집
	및 배포 등을 위하여 구축ㆍ
	<u>운영하는 인공위성으로서 대</u>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
	<u>다.</u>
4.•5. (생략)	4.•5.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제13조의2(수자원위성 관측망의
	<u>구축・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u>
	은 홍수・가뭄・녹조 등 수자
	원 관련 재해의 감시와 수자원
	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
	<u>자원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u>
	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
	<u>용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
	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제37조(권한 (생 략) (현행과 전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수자원 관련 기관 또는 단 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 8. (생 략) <u><신 설></u>

9. ~ 13. (생 략)

제37소(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1. ~ 8. (현행과 같음)
8의2. 제13조의2에 따른 수자원
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 관련 업무
9. ~ 13. (현행과 같음)